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관련 제도 정비〉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1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3
1. 입법배경	3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5
3.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	8
4.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민국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9. 13.
3. 회 부 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안 제78조제2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

함.

나.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안 제133조제1항)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다.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안 제394조제1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IV. 검토의견

1. 입법배경

□ “다자간매매체결회사(Alternative Trading System, 이하 “ATS”)”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등의 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의미함.¹⁾

○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약 10년 동안 ATS 인·허가 신청이 없어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가 지속되었음.

○ 이후, 2023년 7월 ‘넥스트레이드’가 최초로 ATS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2025년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임.

- 넥스트레이드는 2022년 11월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26개 증권회사 등 총 34개 회사가 참여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2023년 7월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 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금융위원회로부터 ATS 예비인가를 취득하여 2024년 하반기 본인
가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시장을 개설할 계획임.

[표1] 넥스트레이드 개요

구 분	내 용
개요	○ 주주: 금융투자협회 등 34사 ○ 설립일: 2022년 11월 11일 ○ 자본금: 1,461억원 ○ 임직원 수: 50명
주요주주	○ 대주주: 금융투자협회(지분율 6.64%) ○ 주요주주: 미래에셋증권 등 7개 증권회사(지분율 각 6.64%) ○ 기타 - 7개 금융유관기관(3개) 및 IT기업(4개)(지분율 각 2.05%) - 교보증권 등 19개 증권회사(지분율 각 1.71%)
주요연혁	○ <u>2023년 5월: 「자본시장법」상 ATS 도입근거 마련</u> ○ 2022년 3월: ATS 설립준비위원회 출범 ○ 2022년 11월: 넥스트레이드 주식회사 설립 ○ <u>2023년 7월: ATS 예비인가 취득</u> ○ 2024년 4분기: ATS 본인가 신청(예정) ○ <u>2025년 3월: 시장개설 (예정)</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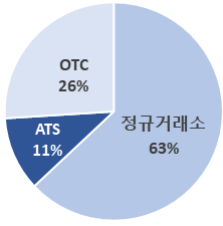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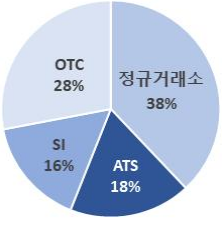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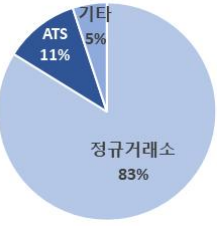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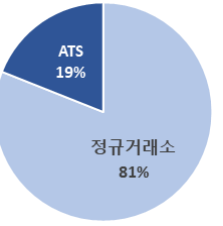
주: 2024년 7월 30일 기준

(자료: 넥스트레이드)

- 향후 본격적인 복수시장 체제가 도입·운영될 경우 거래시간 확대, 새로운 호가 도입, 매매체결 수수료의 인하 등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됨.²⁾
- 참고로,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이미 ATS가 정착되어 복수 거래시장 체제가 운용되고 있음.
 - 현재 미국은 65개, EU는 142개, 일본은 3개의 ATS가 각각 운영 중이며, 거래대금 기준 점유율은 각각 11%, 18%, 11%로 나타나고 있음.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넥스트레이드,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2024. 5.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표2] 해외 주요국 ATS 현황

구 분	미국	EU	일본	호주
ATS 현황	정규거래소 24개 ATS 65개	정규거래소 127개 ATS 142개	정규거래소 1개 ATS 3개	정규거래소 1개 ATS 1개
시장 점유율 (거래금액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2024. 5)

- 개정안은 ATS의 원활한 출범을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① ATS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② 공개매수 대상 정비, ③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 범위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 개정안은 ATS에 관한 특례로서 규정된 미적용 대상 조항에 최선집행 의무조항(제68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8조2항).

현 행	개 정 안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40조, 제72조, 제73조 및 제41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자간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0조, 제68조, ----- -----

현행	개정안
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 “최선집행의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가격, 수수료 및 비용, 청약·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최선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청약·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함.³⁾

○ 한국거래소 단일시장 체제하에서는 증권회사가 매매위탁을 받은 경우 반드시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나. 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 “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매의무”가 부과⁴⁾되었으나, 2013년 5월 ATS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른 복수시장체제 도입에 따라 증권회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처리해야하는지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되었음.⁵⁾

-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2024.5.)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투자자 주문을 처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지시가 별도로 있는 경우 이를 최선집행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① Taker 주문(기존 물량 체결 주문)은 가격·수량·거래비용 등을 감안하여 총금액(매수총비용, 매도총대가)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하고, ② Maker 주문(신규 물량 조성 주문)은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하여 집행하여야 함.

[표3] 최선집행 일반원칙 주요내용

구 분	[Taker 주문] 기존 물량 체결 주문	[Maker 주문] 신규 물량 조성 주문
매수	○ 총비용*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 * (주당 가격×매수수량) + 거래비용	○ 매매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 배분
매도	○ 총대가*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으로 우선 배분 * (주당 가격×매도수량) - 거래비용	

(자료: 금융감독원,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제정방안”, 2024.5.9.)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8조(시장매매의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정부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12. 9.

□ 그런데, 현행법에는 최선집행의무의 적용대상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회사뿐 아니라 현행법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⁶⁾인 ATS에게도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ATS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최선집행의무의 입법취지는 ATS 도입에 따라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청약·주문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ATS는 통상의 증권회사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집행하지 않고 거래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

□ 개정안은 공개매수에 대한 정의에서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다수인에 의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u>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u>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 ----- ----- ----- ----- ----- ----- <u>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및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13조제3항⁷⁾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⁸⁾는 과거 6개월간

“증권시장 밖”에서 10인 이상으로부터 5% 이상의 주식등을 매수하려는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③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로부터 매수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등을 한 후에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 및 제2절에서 같다)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자가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개매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등의 목적, 유형, 그 밖에 다른 주주의 권익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의 경우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매수등을 할 수 있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그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상대방의 수의 합계가 10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개매수제도는 기업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대량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등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의 기회⁹⁾를 부여하여 주주평등을 도모하고 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¹⁰⁾

○ 또한, 주주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음.¹¹⁾

□ 그런데, 공개매수를 정의하고 있는 제113조제1항¹²⁾에서는 장외시장을 “증권시장 및 ATS”로 명시하고 있어 증권시장과 ATS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공개매수의 정의에서 “증권시장”과 “ATS”를 구분하여 규정하게 됨에 따라, “증권시장”인 거래소에서 주식등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적용에서 배제되는 반면, “증권시장

9) 경영권 변동시, 일반투자자는 향후 불리한 지위에 처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저가에 보유지분을 매도하게 되는 압박을 부담하게 되나, 공개매수를 통해 해당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음.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개매수자금 보유증명서 인정범위 확대 - 공개매수자의 자금조달 능력 확인시, 예금·단기금융상품 보유 외에 대출확약서 등도 인정하여 기업 M&A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2023.3.27.

11) 이상복, 「자본시장법」, 2021. p.1167.

12)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밖에서 그 주식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밖”인 ATS에서 주식등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적용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공개매수 정의조항의 “증권시장”에 ATS가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거래소와 ATS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취지임.

○ ATS는 모든 투자자에게 거래 참여의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거래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 현행법상 공개매수의 정의규정(제133조제1항)과 공개매수의 요건규정(제133조제3항)에서 “장외시장”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규율함에 따라 발생하는 조문간 충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

- ☐ 개정안은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94조의1항).

현행	개정안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 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 ----- 매매거래(다자간매매채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 ----- ----- ----- -----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에서는 증권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소의 회원에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은 기금의 범위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¹³⁾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회원별 납부액은 시장의 최대위험노출액¹⁴⁾을 고려하여 산출한 공동기금 총적립규모에 회원별 거래대금 규모를 고려하여 산출한 적립률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2023년 7월말 기준 거래소에는 5,132억원의 증권시장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조성되어 있음.

□ 그런데, 현행법상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는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ATS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① ATS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증권 매매거래 과정에서 채무 불이행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② ATS 회원은 모두 거래소 회원으로서 기금을 적립하고 있고, 회원별 납부액은 회원사의 거래소·ATS 통합 거래 규모에 비례하여 결정되어 회원사 간의 형평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회원 등 거래소가 정하는 회원은 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공동기금을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구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 회원(제1항 단서에 따른 회원을 제외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공동기금의 범위에서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④ 제1항의 공동기금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적립방법, 사용, 관리, 환급, 그 밖에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위기상황 시나리오별 Stress-test를 통해 산출한 각 시장의 직전 3년(750일)간 일별 최대위험액(최대위험 1社 손실액) 중 상위 8개 위험액의 평균값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도 기금 조성보다 통합 운영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됨.

문 의 처
02)6788-5111

【참고자료】 ATS 도입에 따른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¹⁵⁾

- 하루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새로운 호가 도입, 수수료 인하 등 증권거래 인프라·서비스의 혁신 도모

(1) 거래시간 확대

※ **현행 거래시간(시간외거래 제외) 09:00~15:30(6시간 30분)**

접속 매매	09:00~15:20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에 합치되는 경우 선행호가로 매매를 즉시체결
단일가 매매	시가 08:30~09:00 종가 15:20~15:30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
공시시간	07:30~18:00	당일 공시사항, 익일 공시사항, 조회 공시

◆ 하루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 → 거래시간 5시간30분 ↑

① **(거래시간)** ATS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12시간 거래
[(Pre)8~9시 + (정규)9시~15시반 + (After)15시반~20시 / 거래소 세칙·ATS 업무기준]

- **(시가)** KRX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도 **ATS**는 즉시 매매체결
 - 단, 시세조종 방지를 위해 시가 결정 전 10분간(08:50~09:00) ATS Pre마켓을 일시 중단, 동 시간에만 KRX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 [현행] 시가 단일가 매매 중 08:40~09:00에는 접수된 호가 바탕으로 예상체결가 표출

- **(종가)** KRX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ATS거래를 일시 중단**하되, 현행 10분(15:20~15:30) → 5분(15:25~15:30)으로 단축
 - KRX 종가는 펀드 기준가격 산출 등에 활용되는 만큼, 종가에 모든 시장 유동성을 집중

② **(호가제한)** 유동성이 낮은 **Pre마켓·After마켓**은 지정가 호가만 허용^{*}해, 가격 급변 방지 [ATS 업무기준]

* 시장가호가 등 가격 변동폭을 확대할 수 있는 호가는 모두 제한

1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넥스트레이드, “자본시장 인프라의 질적 발전을 위한 ATS 운영방안”, 202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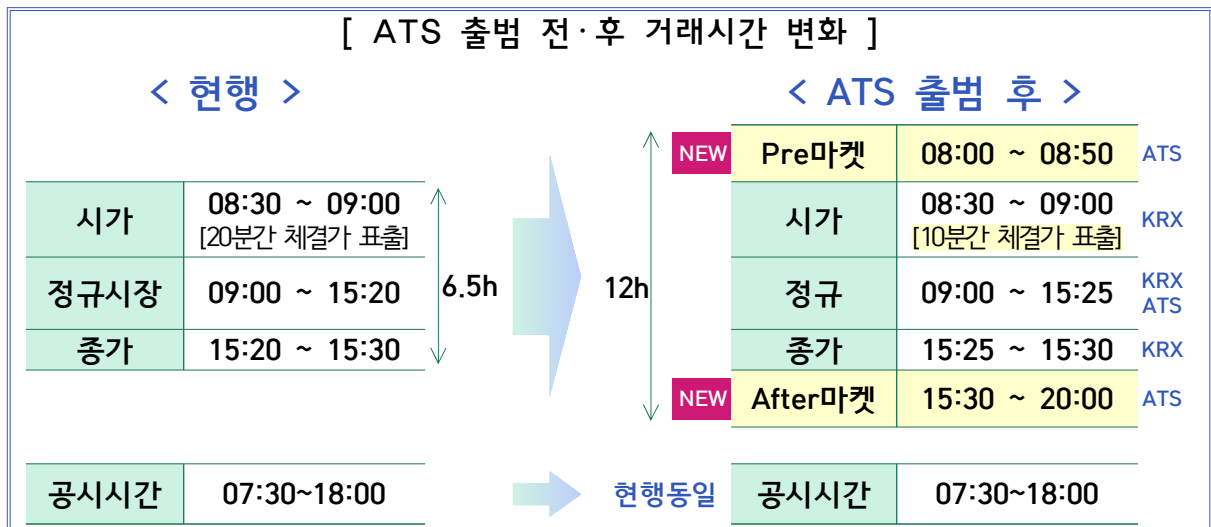
③ **(공시시장조치 시간)** 현행 공시 접수시간(07:30~18:00)은 유지*하고, 익일 적용되는 시장조치*는 ATS 거래종료 후인 20시 공표

* 당일 공시사항은 대부분 영업시간 중 발생, 공시시간 연장시 올빼미공시 우려

** 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투자자 유의종목·관리종목 지정 등

- 단, 공시마감 이후 **거래정지 사유***가 **보도될 경우 ATS가 After마켓 거래만 임의 정지**(익일 공시 시점에 정식 거래정지) [ATS 업무기준]

* 예) 회생·파산, 부도, 은행거래정지, 감사의견 부적절·거절·범위제한한정 등



(2) 새로운 호가 도입

◆ ATS·KRX 모두 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를 도입해 거래편의 증진

① **(중간가호가)**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 도입 [거래소 규정·ATS 업무기준]

* 예) 최우선 매도호가 10,100원, 최우선 매수호가 10,000원 → 중간가호가 10,050원
최우선 매도호가 10,080원으로 하락시 → 중간가호가 10,040원으로 자동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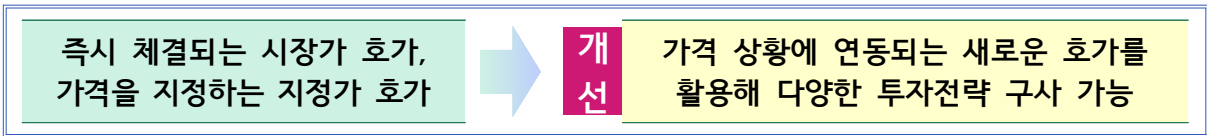
- 매매체결 가능성이 높으면서 가격이 유리하도록 유동적으로 조정되는 호가를 낼 수 있고, 호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효과*

* 중간가호가의 주문수량과 예상중간가격을 표출하여 투자자에게 호가 정보 제공

② **(스톱지정가호가)**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내는 스톱지정가호가 도입 [거래소 규정·ATS 업무기준]

* 예) 현재가 12,000원 → 시장가격이 13,000원 도달시, 13,500 지정가 매수

- 시장가격의 변동과 연계하여 손절매·분할매수 등에 활용 가능



(3) 기타 서비스 개선

◆ ATS의 대량·바스켓매매 요건을 단순화·완화하여 활용도 확대

※ 현행 대량·바스켓매매

-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별종목 대량매매(블록딜) 또는 바스켓 매매를 매수·매도자 간 합치된 가격(상대매매)으로 거래하는 장내매매로, 체결정보는 공개됨

	거래시간	가격범위	대량매매 기준	바스켓매매 기준
정규	09:00~15:30	당일 장중 최고~최저가격	[코스피] 5천주 or 1억원 ↑	[코스피] 5종목 & 10억원 ↑
시간 외	08:00~09:00 15:40~18:00	당일 가격제한폭	[코스닥] 5천만원 ↑	[코스닥] 5종목 & 2억원 ↑

- ① (종목) 코스피·코스닥 소종목에 대해 ATS 대량·바스켓매매 허용 [ATS 업무기준]
- ② (시간·가격) KRX와 동일한 **08:00~18:00**에 대량·바스켓매매 허용, 거래 시간 구분 없이 가격제한폭* 내 상대매매 [ATS 업무기준]
* ATS는 KRX와 달리 특수관계인간 대량·바스켓매매 양도차익에 증여세가 부과
- ③ (거래량기준) **ATS는 5천만원 / 5종목&2억원** 예정 [ATS 업무기준]

◆ 그 외에도 ATS는 수수료 인하, 주문전송·매매체결속도 개선 등 예정

- ① (수수료) ATS는 매매체결 수수료를 KRX 대비 20~40% 인하할 계획으로, 투자자 수수료 부담 절감 기대
- ② (인프라 개선) 신규 전산설비 구축 및 증권사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대비 주문전송 및 매매체결속도 개선 노력